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18. 서지영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4. 6.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7.24.)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25.) :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12.18.) : 상정 ·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2.6.) :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11.27)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서지영의원)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및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방대학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이처럼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의 소멸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은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현행법상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제한적임. 따라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 소재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및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글로벌대학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천우정)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¹⁾) 체계 구축 및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를 추진, 시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방대학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RIS(지역혁신)²⁾을 중심으로 기존의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학성화 사업과 같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2025년부터 RISE 체계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계획임. 이를 통해 시·도 지정 전담기구에 지역 주도

1)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2) 2020년에 도입하였으며 ①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②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③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지역혁신기관과 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³⁾

글로벌대학 30 프로젝트는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 지원 규모를 대학 단위로 하는 프로젝트임. 구체적으로는 지역산업과 사회와 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26년까지 30개교 내외를 지정하여 5년간 교당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⁴⁾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대안반영 폐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3) RISE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에 첨부.

4) 2023년 12월 현재 10개 대학이 지정된 상태이며 향후 20개 대학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임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